기술지원 협약서(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

○ 사 업 명 : 2027년 부천시 ITS(BIS,불법주정차단속,VMS,EDGE) 유지관리 용역
○ 대상 장비 : 부천시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 현장장비 S/W 및 센터 S/W 1식
○ 협약기간 : 2027년 1월 1일 ~ 12월 31일(12개월)
○ 발주기관 : 부천도시공사
○ 제조사·공급사 : ㈜두원전자통신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부천시 ITS(BIS,불법주정차단속,VMS,EDGE)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 현장장비 S/W 및 센터 S/W**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유지관리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붙임 참고)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금27,000,00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붙임 :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 1부. 끝.

2026년 10월 26일

발주기관명 부천도시공사 사장 (인)

제조사·공급사명 ㈜두원전자통신 대표이사 (인)

붙임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

1. 제조사의 S/W업그레이드 및 장비 교체로 인한 OS설치 후 S/W재설치 시 유발되는 장애 대응한다.
2. 발주기관의 장비 이설 및 증설 시 또는 타 기종으로 전환 운영 시 수반되는 S/W설정 변경 및 H/W구성 지원한다.
3. 제조사가 납품 설치된 H/W 고장 시 장애수리(무상/유상)
   - 장애수리는 무상 수리를 원칙으로 하며, 부품 교체 시에는 발주기관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유상수리 한다.
4. 낙찰자가 본 사업 「2027년 부천시 ITS(BIS,불법주정차단속,VMS,EDGE) 유지관리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고 제조사의 유지관리를 요청 시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장비 및 숙련기술자를 제공하여야 한다.
5. 낙찰자가 기술지원 요청 시 제조사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연 조치 시에는 공정거래 위반 및 본 협약서 위반으로 본다.
6. 낙찰자가 제조사의 유상수리 의뢰 시에는 제조사의 예비품을 낙찰자에게 먼저 제공하고, 수리한 품목은 향후 제공하여 장애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7. 제조사가 납품 설치한 H/W, S/W에 대해 기술지원 폐지할 경우에는 발주처 및 낙찰자에게 최소 1개월 전에 통보 하여야 한다.